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 4. 25.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저가구매액 및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을 반영한 장려금제로 변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이하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2014년 6월 23일까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1.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제도 문제점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요양기관에게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구입금액에 더하여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2012. 2월부터 2014. 1월까지 유예되어 2014. 2월부터 다시 시행됩니다)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고마진 의약품의 처방증가와 과잉투약,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구성되었고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의 전환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안 제19조, 제22조)을 삭제하고, 약품비 절감에 따른 장려금 지급 종류를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75조의2 제1항제1호~제3호)하였으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 장려금을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은 장려금을 산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에 통보하는 등 장려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위임규정을 신설(안 제75조의2 제3항~제5항)하였으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안 별표6) 하였습니다.

(2)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대체조제장려금, 사용장려금 조항에 더하여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규정을 신설하여 약품비 절감과 관련한 장려금 제도를 통합하고 개편하였으며(안 제1장~제4장 신설 및 전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관련(안 제4장)하여, 기존 외래처방 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에 입원을 추가하고, 저가구매와 의약품 사용량(환자당 약품비 또는 투약일당 약품비)의 감소를 포함한 총 의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장려금은 요양기관의 상대적 약품비 발생수준을 평가한 약품비고가도지표에 따른 요양기관별 지급률에 따라 저가구매 장려금의 경우 10~30%,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10~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 확인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13조제4항제11호),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 안 제3조의 2), 의약품의 실거래가 조사 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안을 위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개정 안 별표6).

건강보험 의약품의 공급약가를 통하여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약가 인하 규정 삭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법률 제12176호, 2014. 7.2 시행)으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 및 제외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 제13조제4항제12호 및 제13조제5항제3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안 제8조제2항제12호 및 안 별표7).

5. 향후 전망

기존 저가구매에 따른 일률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벗어나, 사용량 등을 고려한 입법예고안은 고마진 의약품의 처방증가와 과잉 투약과 관련한 피해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 지급률을 하향 조절하였을 뿐 제약회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납품요구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수렴절차 및 이후 위 안의 시행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이덕구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613 | E-Mail. tklee@shinkim.com |
| ● 차효진 변호사 | TEL. 02 316 1698 | E-Mail. hjcha@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